

공 시 송 달 공 고

[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]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(자동차등록번호판) 및 제49조(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) 규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태료) 부과고지서를 우편발송(등기) 하였으나, '폐문부재', '수취인불명'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- 1. **공고제목:**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
- 2. **법적근거:** 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 및 동법 제49조
- 3. **공고기간:** 2026. 9. 17. ~ 2026. 9. 30.
- 4. **공고방법:** 홈페이지 및 게시판
- 5. **공고 대상 및 내용**

성명 (법인명)	차량번호	주 소	위반내용	위반 일시 및 장소	처분 내용
양*경	부산** 카8**1	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5*번길 2*-*8, 3**호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9조 위반 (이륜자동차번호판 미부착 운행)	2026. 2. 6. (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29-5)	과태료 50만원
임*	3*두1**0	경기도 파주시 동산*길 *, 5**호	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 위반 (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)	2026. 3. 30. (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13번길36 양우드라마시티)	과태료 50만원

6. 안내사항

- 가. 공고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2026. 9. 30.(수)까지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(☎031-940-5781)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납부기한(공고기간)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(공고기간)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/100의 가산금과 체납 1개월마다 과태료 금액의 12/1,000의 증가산금이 5년까지(최대 75%)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(☎031-940-578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9. 17.

파 주 시 장